[별지 제44호서식] (규칙 제76조제1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○ ○ 선 거　투 표 안 내 문

투표시간	월　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
투표장소	

▶ 투표하러 갈 때 자신의 등재번호를 오려 가면 빨리 투표 할 수 있습니다.

◀ 선거인명부 등재내역 ▶

선거인성명		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	
선거인성명		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	
선거인성명		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	
선거인성명		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	
선거인성명		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	
선거인성명		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	
선거인성명		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	

▶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·여권·운전면허증·공무원증
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·장애인등록증·외국인등록증·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.

귀하

주소

우편번호

주 : 1. 이 서식은 게재사항과 게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체의 규격이나 선거인명부 등재내역란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.
2. 투표안내문 발송용봉투를 일부가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 투표안내문에 세대주의 주소·성명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.
3. 투표절차 그 밖의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앞면 또는 뒷면에 적되, 이를 투표안내문발송용봉투에 적은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
4.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“투표시간”란 중 “오후 6시까지”를 “오후 8시까지”로 고쳐서 기재한다.
5. 점자형투표안내문은 투표장소와 선거인명부 등재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.